

의안번호	2215728
의 퇴 인	이재관 의원
회 답 일	2026. 2. 24.
추계번호	25A7424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을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7,300만원, 2031년 1억 9,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억 1,100만원(연평균 1억 8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가스배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39조의9)	173	177	182	187	192	911	18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9조의9(가스배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둔(제1항) ○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함(제2항) ○ 가스배관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(제5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9조의9(가스배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고(안 제39조의9제1항), 동 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(안 제39조의9제2항),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(안 제39조의9제5항)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는데, 이 중 일부에 한해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
 - 먼저, 가스배관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유사 사례인 한국가스공사의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준용하여 추계함
 - 상임위원의 경우 그 수를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 1명의 상임위원을 두는 것으로 가정함
 - － 상임위원 신규 채용에 따른 비용은 봉급(고위공무원 기준)과 수당(직급보조비 및 정책급식비)의 합으로 하며, 봉급 단가는 산업통상부를 준용하여 추계함
 - 전문위원회의 경우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문위원회의 수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수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가스배관위원회 회의 운영비(안 제39조의9제1항)

- 안 제39조의9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로 회의 운영비용이 발생하며, 동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함
- 유사 사례인 한국가스공사의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고려하여 추계 기간 동안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수당 단가를 6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가스배관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,200만원(5명×60만원×4회)으로 추계됨
 -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정원의 과반인 5명으로 하고, 한국가스공사의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(연 4회) 및 수당 단가를 반영함
 - 안 제39조의9제2항에 따르면,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
 - 또한, 안 제39조의11제1항에 따르면,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
 1. 가스배관시설 접속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
 2.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 3. 가스배관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가스배관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
 4.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

[표 2] 가스배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가스배관위원회 회의 운영비(안 제39조의9제1항)	12	12	12	12	12	60	1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가스배관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(안 제39조의9제2항)

- 안 제39조의9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상임으로 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은 상임위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 본 추계에서는 1명으로 가정함
- 가스배관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6,100만원, 2031년 1억 8,000만원 등 5년 동안 총 8억 5,100만원으로 추계됨
 - 상임위원 인건비는 2026년 예산상 산업통상부(본부)의 봉급(고위공무원 기준 월 12,160천원)을 준용하고,¹⁾ 수당은 직급보조비(1급 기준 월 75만원)와 정액급식비(월 14만원)로 함
 - － 추계기간 동안 봉급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 평균임금 상승률(3.0%)을 적용하고, 수당 단가는 2026년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3] 가스배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가스배관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(안 제39조의9제2항)	161	165	170	175	180	851	17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1) 대한민국정부, 『예산안 첨부서류 I』, 2025. 9.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